
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8. 2. 5.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공간정보진흥과	담당 자	• 과장 김태경, 사무관 송재은, 주무관 김유석 • ☎ (044) 201-3472, 3475	
보 도 일 시	2018년 2월 6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6.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간정보 전공·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서비스·일자리 창출 기대

□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,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,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,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일, 이 같은 내용의 ‘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(시행령 제1조의 2)

-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*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·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한다.

* 측량업, 수로사업,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,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, 공간정보의 생산·관리·가공·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

②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(시행령 제17조의 4 신설)

-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,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.

③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·운영,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,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한다.(시행령 제20조)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,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,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.”라며,

○ “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,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진흥과 송재은사무관(044-201-34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